

連續刊行物の 標目 選定

江原大學校 圖書館
金壯賢·李善子·朴正植

〈目 次〉

- | | |
|------------------------|--------------|
| I. 序 論 | 2. 英·美의 目錄規則 |
| 1. 研究의 目的 | 3. 日本의 目錄規則 |
| 2. 連續刊行物の 定義 및 特徵 | 4. 韓國의 目錄規則 |
| II. 諸目錄規則上 連續刊行物の 目錄規則 | III. 提案 및 結論 |
| 1. 19세기까지의 目錄規則 | 參考文獻 |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연속간행물은 최근 학문의 연구와 신정보 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체이다. 이같은 연속간행물의 중요성은 출판량과 이용도에 있어서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속간행물은 정보의 속보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변화가 많은 자연과학, 응용과학에서 학술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느(George S. Bonne)

는 자연과학이나 공학분야의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의 대부분은 그 분야의 연속간행물에 실린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용률이 높은 것은 화학분야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일 낮은 수학마저도 76%였으니 자연과학이나 공학분야의 새로운 연구가 얼마나 그 방면의 연속간행물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¹⁾

연속간행물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종류에 따라서는 개개의 도서관마다 표목선정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며, 여러 목록규칙상에서도 표목선정에 관한 통일 규칙이 없고 기준안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현장에서의 연속간행물 서지통정업무와 목록검색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된 목록규칙들 중 연속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連續刊行物の 定義 및 特徵

1) 連續刊行物の 定義

연속간행물이란 'Serials'의 역어로서, 일본에서는 '축차간행물'로도 불리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축차간행물', '계속간행물'(1974년에 출판된 영미목록규칙. 국역판), '연속간행물'(ISBD(S)-국역본-, 1977) 등으로 혼용되어 쓰였으나 현재에는 '연속간행물'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Serials'라는 용어는 유럽지역에서 사용되는 'Periodicals'라는 용어

1) George S. Bonne, Literature of Science Technology(New York: McGraw-Hill, 1966), p. 3(邊台鉉, "우리나라 연속간행물의 표목선정"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1990. p. 1에서 재인용).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연속간행물에 대한 여러 정의를 살펴보면, 국제도서관연맹(IFLA)이 제정한 「국제표준서지기술법-연속간행물(ISBD(S))」에서는, 연속간행물이란 “분책으로 연속해서 간행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권호순과 낱자순으로 이어지며 무한정하게 계속될 것이 의도되고 있는 출판물”²⁾이라고 정의하였다. ALA용어집에서는 연속간행물이란 “어떠한 형태든지 분책으로 연속해서 간행되며, 권호나 낱자를 나타내는 표시를 갖고 무한정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판물로 정기간행물, 신문, 연간물(보고서, 연감 등), 학술잡지(Journals), 연구논문(Memoirs), 회의록(Proceedings), 회보(Transactions) 등을 포함한다.”³⁾라고 하였다. 오스본(Osborn, A. D.)은 “연속간행물을 구성하는 요소는 (1)한 표제와 (2)일련번호가 주어지고 정기적이건 부정기적이건 원래 표제나 변경된 표제 아래 계속성이 기대되는 간행물”⁴⁾이라고 하였다. 사공철 등편의 「도서관학·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인쇄된 형태 혹은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를 취하고 연속적인 分冊으로 발행되며, 대체로 번호 혹은 연호(연대)표지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여기에는 정기간행물, 신문, 연감, 번호가 매겨진 단행본 총서, 회의록, 회보 등이 포함된다”⁵⁾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연속간행물은 하나의 표제로서 권호나 낱자 등의 일련번호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

2) 국제도서관협회연맹, 국제표준서지기술법(연속간행물용), 리재철, 현규섭 역주(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7), p. 12.

3) Heartsill Young,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Chicago: ALA, 1983), p. 203.

4) Andrew D. Osborn, Serial Publications: their place and treatment in libraries 3rd ed.(Chicago: ALA, 1980), p. 3.

5) 사공철 등편.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6), p. 145.

라 하겠다.

2) 連續刊行物の 特徵

연속간행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발행의 계속성 : 어떠한 형태든지 연속해서 간행될 의도가 있는 간행물이다.

(2) 표제의 일관성 : 같은 표제 아래에서 일련번호를 가지고 발행되어 진다.

(3) 내용의 속보성 : 연속간행물의 내용은 각 학문분야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간행의 정기성 : 부정기적인 간행물도 있지만 대부분 정기적인 간행 날짜를 지킨다.

(5) 집필자의 집합성 : 1인이 아닌 다수의 집필자가 집필한다.

3) 連續刊行物の 類型

연속간행물은 출판기원, 목적수행, 형식, 발행단체 등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지나 본고의 표목선정은 발행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구분하면,

- (1) 학·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 (2) 연구·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 (3) 대학에서 발행하는 연구지
- (4) 정부간행물
- (5)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것
- (6) 업계에서 발행하는 것
- (7) 상업적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것

(8) 동인지 및 개인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Ⅱ. 諸目錄規則上 連續刊行物の 目錄規則

1. 19세기까지의 目錄規則

1) 大英博物館 編目規則(ninety-one rules)

목록규칙에서 연속간행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최초의 목록규칙으로 파니찌(Anthony Panizzi)의 지도 아래 편찬된 91조의 목록규칙이다. 여기에서 다른 연속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보면, 규칙 80조에 의하면, “Academics”, 전문학교, 협회, 대학, 학술적 또는 문학적 학회, 그 명칭이 알려지고 있는 것, 또는 그 명칭을 명시할 수 있는 것의 모든 문서, 연보, 회보, 일지, 회의록 등이 같은 단체에 의해 편찬된 시리즈 부분을 구성하는 다수의 저자에 의한 저작은 일반적인 명칭 ‘Academics’아래에 목록되며, 영문으로 된 국명 및 그 단체의 회의가 행하여 진 도시 명칭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배열된다.”⁶⁾라고 규정하여 ‘Academics’라는 형식표목 아래에서 지리구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81조에서는 리뷰지, 신문, 학술지, 잡지, 관보, 연보 등은 ‘Periodical publications’라는 형식표목 아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영박물관 편목규칙은 그 저작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6) British Museum, Rules for the compilation of the catalogue of printed Books in the British Museum(London: British Museum, 1841),, p. ix. (南台祐, “目錄에 있어서의 團體著者性の 變遷考—특히 英美目錄規則을 中心으로—”, 도서관 제40권 제6호, p. 45에서 재인용.

관계없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저작을 집중시킴으로써 형식표목을 연속간행물의 표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Jewett 規則

Jewett목록규칙은 'Report on the construction of catalogues of libraries and their publication by means of separate, stereotyped titles : with rules and examples'라는 표제명으로 1853년에 완성되었다.

이 규칙의 조문 22조에 의하면 “명칭이나 성격이 어떠한 독립된 저작 또는 종합서명으로 계속된 시리즈로서 출판물을 발행하는 Academics, 전문학교, 협회, 대학교, 대학, 문학적·과학적·경제적·자선적 및 종교단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집회, 회의, 위원회, 법인 및 기타 단체는 그들에 의해 그들의 명칭 단독으로 발행된 모든 저작의 저자로서 간주되고 고려되어야 하며 표목은 단체의 명칭이 되며, 관사가 아닌 최초의 단어가 기본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칙의 註3에서 “관청간행물은 국명 아래에 기입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Jewett규칙의 특징은 단체저자의 개념을 확대시킨 점과 형식표목의 기입을 폐지하고, ‘직접단체의 명칭 下의 기입’을 규정하여 놓은 것을 들 수 있다.

3) Cutter 目錄規則

Cutter 목록규칙은 1876년에 완성된 사전체 책자형 목록규칙으로

7) Charles C. Jewett. "Report on the construction of catalogues of libraries and their publications by means of separate, stereotyped titles : with rules and sample", 2nd ed. (Washington D. C. : Smithsonian Institution, 1853), p. 53 (남태우, p. 46에서 재인용)

서 205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부록을 포함하여 89페이지의 책자로 된 것이었다. 이 규칙은 계속 수정 보완하여 1904년에 369조 173페이지로 확대된 제4판이 발간되었다. Cutter는 이 규칙에서 목록의 目的을 “저자나 서명, 주제를 아는 이용자가 도서를 검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 장서를 저자, 주제에 의하여 문헌의 종류를 표시하기 위하여, 도서의 선택에 있어서 판차나 특징으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Cutter는 규칙 서두에서 저자의 정의를 “저자는 좁은 의미로는 여러 저자의 저작을 함께 모았을 때 그 도서를 있게 한 책임자를 일컫는다. (통상적으로는 편자, 더 적절한 용어로는 수집가), 인간의 집단(학회, 도시, 입법부, 국가)은 그들의 논문집, 회보, 잡지, 토론자료, 보고서 등의 저자로서 간주되어 진다.⁸⁾”라고 하였다.

연속간행물 표목선정에 관한 조문은 제45조에서 제95조에 걸쳐서 단체저작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그 표목은 단체명으로, 제133조에서 무저자명 연속간행물의 표목은 관사나 연속번호를 제외한 최초의 표제어를, 그리고 제145조의 표제가 변경된 연속간행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英·美의 目錄規則

1) Joint Code

英·美의 도서관학자들의 공동연구로 1908년에 완성된 전문 174조의 목록규칙이다. 이 규칙은 1904년 결정된 영·미 도서관협회의 합

8) C. A. Cutter, Rules for a printed dictionary catalogue(Washington D. C. : Government Printing, 1876), p. 14

의에 따라 영국판 “Cataloguing Rules : Author and Titles Entries”라는 표제로, 미국판은 “Catalog Rules : Author and Titles Entries”라는 표제로 각각 출판된 연유로 본서명과 관계없이 “Joint Code”, “Anglo-American Code”, “AA Code”로 명명되는 실제적인 영미목록규칙 1판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연속간행물 표목선정에 대한 내용은 제121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정부기관 또는 학회의 일반간행물은 단체명 아래 기입하고, 학교 등 영조물단체(Institutions)의 간행물은 그 단체의 소재 지명 아래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기간행물은 학회 또는 협회에 의하여 간행되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표제 아래 기입”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간행빈도가 1년 이상 되는 정기간행물과 단순한 학회의 의사록, 회보, 연차보고서 등은 학회명 아래 기입하고 다시 의문의 경우에는 단체명 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기간행물의 기입 선정에 있어 표제와 단체를 방황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있다.”¹⁰⁾

2) ALA 目錄規則

ALA 목록규칙에서는 연속간행물을 정기간행물, 신문, 연감류, 명부, 총서 등으로 구분하여 다원적으로 표목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원적 표목선정이란 “各 간행물의 간행빈도와 성격(발행단체)에 준하여 세구분을 행하고 이에 적합한 기본기입선정을 각각 세움으로써 各 간행물에 따로 규칙을 세워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¹¹⁾

9) 崔達鉉, “逐次刊行物の 基本記入 選定에 關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제4집(1977), p. 216.

10) 崔달현, p. 216.

11) 韓國圖書館協會 編, 非圖書資料의 整理(서울: 同協會, 1968), p. 50.

규칙 5조 C항에서 F항까지 연속간행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연속간행물은 일반적으로 표제 아래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단체명 아래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기간행물, 신문, 연감류 등은 표제 아래 기입하고 紀要, 연구보고, 의사록, 회보 등은 단행본과 동일하게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속간행물에 관한 한 “저작의 서지적 내용보다 출판형식에 의하여 기입의 선정을 결정하고 있으면서도 紀要, 연구보고 등은 같은 연속간행물인데도 예외적으로 출판형식을 배제”¹²⁾하고 있다.

3) Lubertzky 目錄規則(CCR)

CCR(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은 1953년 Lubertzky가 기초한 규칙이다. 그 내용의 중요성은 1961년의 목록원칙 국제회의에서 거의 전부가 채택된 것으로 알 수가 있다.

규칙 71조에서 연속간행물에 대한 규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간행되는 출판물은 표제 아래 기입하고, 71조 B항에서는 표제가 상업적 출판사 이외 단체의 두문자(initials) 또는 완전명으로 시작되는 연속간행물이나 표제가 뚜렷하지 못하고 불명확하고 불완전한 연속간행물이나 발행처 이름없이 그 밖의 다른 점으로 불완전한 연속간행물은 단체명 아래에, 71조 C항에서는 의사록, 결의(actions), 회보를 주로 다룬 것, 한 단체의 활동 및 직능의 정기적 보고로서 봉사하는 연속간행물 또한 단체명 아래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Lubertzky의 CCR은 “단체저자에 대해 크게 역할을 부과한 규칙으로서 오늘날 단체저작의 목록작업에 크게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고

12) 최달현, p. 217.

평가할 수 있다.”¹³⁾

4) 國際目錄原則會議(ICCP)

ICCP(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는 서지교환의 강력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미의 목록원칙에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로서 일명 파리회의라고도 한다.

이 회의에서 합의된 기본적 원칙은¹⁴⁾

- (1) 목록은 기본기입과 부기입 등 多記入(Multiple entries)조직이 필요하다.
- (2) 개인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자가 기본기입이 되어야 한다.
- (3) 단체의 집단적 활동을 나타내는 저작의 기본기입은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CCP에서 다루고 있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내용을 보면, 9.11조에 의하면 그 저작이 본질적으로 그 단체의 총체적 사상 또는 활동의 표현인 경우에는 그것이 총괄자 또는 봉사자로서의 누군가가 개인명으로 서명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명 아래 기본기입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12조에서는 만일 표제 또는 표제지의 표현이 그 저작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가 그 저작의 내용에 책임을 지니고 있음이 명백할 경우에만 단체명 아래 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1.14조에서는 저자명보다 표제에 의하여 주로 또는 관용적으로 더 알려진 저작은 표제 아래 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조문에서 단체명

13) 남태우, p. 59.

14) C. Sumner Spalding, "ISBD(S) and Title Entry for Serials", Drexel Library Quarterly, Vol. 11 No. 3(July 1975), p. 23(변태현, pp. 24~25에서 재인용).

대한 인정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ICCP원칙이 “저자 기입을 위주로 하려는 주장과 서명기입을 위주로 하려는 주장과의 부득이한 절충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진다.”¹⁵⁾

ICCP는 단체저자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이후 세계 각국의 목록규칙 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AACR1

1967년에 제정된 AACR1(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 북미판)에서는 ICCP의 애매모호한 조항들을 배제하였다.¹⁶⁾ 첫째 표제 속에 단체명 또는 그 약자가 들어 있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설명 그 출판물이 단체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명 아래 기입하고, 둘째 너무 애매한 ICCP원칙 11.14조항을 폐기하여 연속간행물이 표제에 의하여 주로 또는 관용적으로 알려져 있는지와 표제 속에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셋째 식별지명의 개념을 삭제하였다.

규칙 6조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한 연속간행물이 아니면 표제가 무엇이든 모두 표제 아래 기입하되, 다만 단체에 의한 연속간행물은 출판의 형태에 따라서 기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규칙 6조 A항의 연속간행물로서 단체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의 권한 아래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 개인의 저작으로서가 아닌 것, 규칙 6조 B 1항의 단체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의 권한 아래 발행된 정기간행

15) 최달현, p. 129.

16) 최달현, pp. 219~220.

물, 총서 또는 계속적으로 출판되는 서지, 색인, 인명록, 전통적인 인명사전, 연감 등 규칙 6조 B 2항의 단체 혹은 단체의 권한에 의하여 발행되는 그 밖의 연속간행물 등은 모두 단체명 아래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규칙 6조 C항에서는 개인저자에 의한 연속간행물은 개인명 아래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고, 규칙 6조 D1항의 표제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단체 아래 기입된 연속간행물이 명칭이 변경된 것은 각각 독립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영미목록규칙 영국판은 연속간행물에 대한 규정을 북미판의 예외 규정만 남겨 놓고 그 외는 모두 표제 아래 기입을 통일시키고 있다.

6) AACR 2

1978년에 개정된 AACR 2는 기계가독목록에 적용토록 만든 규칙이므로 전체의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

연속간행물의 표목선정을 보면 AACR 1의 6조는 저자성 상태가 아니고 자료의 출판패턴의 계속성을 표시하는 조항이므로 삭제되고 일반규칙에서 다루고 있으며, 저자의 개념은 좁아져서 개인저자만을 인정하고 단체명에 대해서는 저자의 범주에서 실제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즉 개인저자의 정의를 21.1A1에서 “저작의 지적 또는 예술적 내용의 창작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지닌 사람”이라고 내리고 있다.

단체명을 기본기입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규칙 21.1B2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체에서 발생(emanating)된 저작은 아래와 같은 범주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단체표목 아래 기입한다”

- (1) 단체 자체 또는 다음에 열거되는 사항에 관련되는 관리적인 성격을 지닌 것: 내부의 방침·절차 및 운용, 재정, 직원 및 스

템, 자원.

- (2) 다음의 형태에 속하는 법률이나 행정상의 저작: 법률, 시행령, 행정법규, 조약, 판결, 입법 공청회.
- (3) 단체의 집단적 의사를 기록한 저작: 위원회나 심의회 등의 보고서, 대외 입장을 나타내는 공식 견해.
- (4) 회의(의사록, 논문집 등), 탐험대 또는 단체의 정의에 해당되어 개최된 집단적 활동을 보고한 저작. 단 주최한 명칭이 목록 대상 자료 중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5) 연주, 연기그룹의 책임이 단순한 연주, 제작 등의 범위를 넘어 그룹 전체의 집단적 활동의 소산으로 된 녹음물.

그러나 하나의 저작이 위의 범주에 속하고 있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서명 기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명기본기입의 범위(규칙21.1C)는 다음과 같다.

- (1) 개인 저작성이 불명 혹은 저작 책임이 분산되어 있거나 결정할 수가 없는 경우와 해당 저작이 단체로부터 발행한 것이 아닌 경우.
- (2) 합집 혹은 편집자의 지시하에 작성된 저작물.
- (3) 규칙 21.1B2에 제시된 범주에 해당되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저작도 아닌 저작물.
- (4) 종교단체에 의하여 성전으로 인정된 저작물 등이다.

연속간행물은 본서명이 변경되었을 때 각각의 서명 아래 독립하여 기입(규칙 21.2C)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규칙 21.3B1에서는 본서명의 변경이 없어도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명 표목이 그 책임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기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단체명표목의 수가 감소하고 저자·서명표목의 수는 증가되었다 할 수 있다.

3. 日本의 目錄規則

1965년에 간행된 일본목록규칙에서는 연속간행물의 표목선정에 관하여 45조에는 축차간행물은 서명을 표목으로 하되, 1단체 저작의 통칙에 해당하는 축차간행물은 단체명,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나 합병이나 분리된 경우에는 변경된 단체명을 표목으로 하고 있다.

70조에서는 축차적으로 간행되는 연감, 인명록 등은 서명을 표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축차적 성격이 아닌 연감이나 인명록은 개인 또는 단체명을 표목으로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3조에서는 신문, 잡지는 서명으로, 기요, 보고서는 단체명을 표목으로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韓國의 目錄規則

1) KCRP

박봉석의 '조선동서편목규칙'은 해방후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 일본목록규칙 중 '和漢書圖書目錄法'과 '和漢目錄規則'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다룬 條文을 보면, 제47조에는 축차간행서 등은 지명, 관공서, 학회 등의 계속 간행서로서 「館報」 「會報」 등으로 되었을 때는 「관공서명」 「학회명」을 보기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50조에서는 축차간행서로서 서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서명을 표목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규칙 47조와 같이 표제명이 일반적 용어일 경우는 관공서명이나 학회명을 보기하여 기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표제만으로는 그 자료의 주제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적용되고 있다.

2) 韓國目錄規則 1966

1964년에 제정된 ‘한국목록규칙’과는 기본원칙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처음 목록규칙을 제정할 때 결의한 사항들을 그대로 준수하였다. 즉 “표목의 형식을 한글로만 한다”¹⁷⁾라고 규정하고 있다.

KCR에 나타난 연속간행물의 표목선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¹⁸⁾ 6조 a항에서는 “年鑑, 人名錄, 電話番號簿 等 축차적으로 간행되는 것은 최신 서명을 표목으로 한다. 그러나 축차적으로 간행되지 아니하는 인명록 등은 개인 또는 단체의 저작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잡지는 최신지명을 표목으로 하고, 발행이 정지된 잡지는 구지명 또는 장기간 적용된 지명을, 以前 간행물과 권호수로서 계속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지명일지라도 새로운 잡지로 간주하여 기입을 달리하며, 학회, 공공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간하는 잡지도 일반적으로 그 지명을 표목으로 하고 발행하는 단체명을 부출한다.

신문은 최근 신문명을 표목으로 하고, 한 신문이 몇가지의 판(일요판, 조간, 석간)등으로 약간씩 다른 신문명을 가지고 발간될 경우에 각 판은 독립적으로 취급하고 그 주되는 신문명을 부출한다.

총서, 전집, 강좌류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서명을 표목으로 한다. (1) 편자나 출판자명으로 더 잘 알려진 총서는 편자

17) 韓國圖書館協會 篇, 韓國目錄規則(서울: 同協會, 1966), p. vi.

18) 앞책, pp. 8~10.

나 출판지명을 표목으로 할 수 있다. (2) 뚜렷한 총서명이 없이 학회나 공공기관, 또는 기타 단체에서 발행한 총서는 그 단체명을 표목으로 한다.

연속간행물의 부록에 관하여는 17조 d항에서 다루고 있는데¹⁹⁾

- (1) 축차간행물의 부록으로서 간행된 단행본은 그 저자를 표목으로 하고 축차간행물 명칭에 부록이라 부기하여 부출한다.
- (2) 부록의 저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축차간행물의 명칭을 표목으로 하고 잡지 또는 신문을 원괄호에 묶어서 부출한다.

그리고 一般索引, 要語索引은 편자명으로, 편자가 알려지지 않은 색인, 정기적 색인은 서명을 표목으로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목록규칙」의 연속간행물 기입 선정을 보면 “『영미목록규칙』과 마찬가지로 제6조에서 다원적으로 표목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미목록규칙: 영미판’보다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²⁰⁾

총서에 관하여 다룬 6조 d항은 ALA 목록규칙 5조 F(2)항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ALA 목록규칙이 지니는 애매성을 역시 갖고 있다 하겠다. 즉 ‘편자나 출판자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어서 표목의 선정에 있어서 매우 애매하다. 실제로 국내 각 도서관 및 서지마다 총서 취급이 다르고 같은 서지 내에서도 표목 선정 원칙이 일정하지 않다.

‘한국목록규칙’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단체명과 관련한 일반적 용어의 취급이다. ‘논문집’, ‘조사보고’, ‘연차보고’, ‘회보’, ‘회지’, ‘장서목록’ 등과 같이 일반적 용어로서만 서명을 이루고 있는 예가 허다하게 발견되는데, 이러한 일반적 용어와 단체명의 취급에 대한

19) 앞책, p. 16.

20) 최달현, p. 229.

규정이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서지목록상 혼란을 빚고 있음은 부정 못할 사실이다. 장일세氏는 “誌名에 확실히 학회나 단체 또는 정부기관을 지칭하는 용어가 들어 있거나 또는 그러한 기관에 대한 약어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관명을 기본기입으로 한다. 이에 대한 구별에 있어서 다소 애매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단체명이나 그에 대한 약어가誌名에 표시된 것 같이 느껴지는誌名이 있기 때문이다.”²¹⁾라고 단체명 기본기입을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문제의 애매성을 밝히고 있다.

실제 각종 국내 서지목록에서도 목록규칙상의 미비때문에 단체명과 일반적 용어의 취급이 다양하게 기입되어 서지통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서지나 목록에서 기본기입으로 채택이 안된 것은 부기입을 만들어 이용에 불편을 없앨 수도 있으나 연속간행물의 累增現象이 해마다 가속화되어 가고 종합목록이 다량으로 나오게 된 오늘날 자료의 검색가능한 요소별로 모두 부기입하기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예산 등 사정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단일기입으로서 서지 또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형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목록규칙에서는 연속간행물의 표목 선정을 일반적으로는 표제에 의하지만, 단체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단체명 아래에 기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표목의 불일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연속간행물에 대한 기존 목록규칙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후 대학도서관들이 이를 일관성있게 적용하여 기본기입을 작성하고 또한 서지상의 표기에도 받아들여질 때 도서관의 목록이나 서지의 검색기능은 제고될 것이다.

21)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說(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68), p. 129.

Ⅲ. 提案 및 結論

연속간행물은 발행단체의 조직 및 명칭의 변경, 통폐합, 편집 내용의 변경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또는 단순히 시대적인 감각에 맞추기 위하여 표제나 출판책임이 변경된다.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유동적인 연속간행물의 목록기입은 단행본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연속간행물의 천문학적 증가는 자료의 수집과 보존, 이용면에서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UNESCO, IFLA 등의 국제기구로 하여금 서지통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간행물 편목에 있어서 쟁점이 되어 오던 표목의 선정에 관한 주요 목록규칙상의 규정들을 분석, 검토함과 아울러 동규정들의 상이한 해석과 적용으로 인한 각종 서지목록상의 혼란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연속간행물의 표목선정의 혼란은 일반적 용어와 단체명의 취급에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연속간행물 표목의 기입은 표제에 의하여 더 많이 알려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간으로 각 유형별로 선정기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문·잡지류는 최신지명을 표목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 (2) 학회·협회지의 경우는 표제를 표목으로 선정한다. 학회나 협회에서 발행한 간행물의 경우는 단체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거나 단체명이 더 잘 알려진 경우라 하더라도 표제를 표목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 (3) 연구·조사기관지의 경우는 표제가 일반적인 용어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표제를 표목으로 삼고, 일반적 용어로만 이루어

진 간행물에 대해서는 단체명을 표목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개인에 의한 연구·조사지는 개인명을 표목으로 선정한다.

- (4) 대학연구지의 경우도 일반적 용어로 이루어진 간행물은 단체명으로, 그렇지 않은 간행물은 표제를 표목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정부간행물의 경우는 관용의 명칭과 정식명칭이 혼용되어 있고, 국명의 부기여부 등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표제를 표목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 용어로만 이루어진 간행물에 대해서 모기관명을 표목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 (6) 기업체나 동인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경우도 표제를 표목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 용어로만 이루어진 간행물에 대해서만 단체명을 표목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 (7) 목록의 경우는 단체명을 표목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 (8) 색인의 경우는 표제의 식별이 명백하고 간기가 정기적인 것은 표제를 표목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간기가 부정기적인 것, 일시적으로 발행된 것은 단체명을 표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 총서의 경우는 총서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총서명을, 각권이 독립되어 단권의 형식으로 발행된 것은 단행본으로 취급하여 표목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 (10) 기록, 즉 각 경기대회의 기록류는 그 주관단체의 단체명을 표목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모든 연속간행물의 표목선정은 표제를 기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반적 용어로 이루어진 간행물에 대해서만 단체명을 표목으로 선정하기를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표제속에 단체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국어는 영어의 어순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 용어가 표제의 처음에 오지 않고 ‘단체명+일반적 용어’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강원대학교 논문집’, ‘서울대학교 논문집’과 같은 형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 논문집이 분산됨으로써 배열과 이용상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姜俊浩, “定期刊行物室의 運營:國會圖書館 定刊係를 中心으로”, 도서관, 제28권 3호(1973. 3), pp. 229~236.
- 權容瑢 “英美目錄規則의 變遷과 標目에 關한 小考”, 국회도서관보, Vol. 23 No. 4(1986. 8), pp. 24~34.
- 金南碩, 非圖書資料:整理의 理論과 實際-수정판-. 대구:계명대학교출판부, 1988.
- 金上基, “學術雜誌의 機能 變遷에 關한 研究”, 서울: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 金容喆, “英美系 目錄規則의 發展에 關한 研究”, 공주사범대論文集, 제21집(1983), pp. 481~498.
- 南台祐, “目錄에 있어서 團體著者性의 變遷考:특히 英美系 目錄規則을 中心으로”, 도서관, Vol. 40. No. 6(1985. 11~12), pp. 33~72.
- 노문자, “목록이용의 편이도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43권 3호(1988), pp. 3~24.
- 리재철, 현규섭 역주, 국제표준서지기술법:연속간행물, 서울:한국도서관협회, 1977.
- 木寺清一, 洋書目錄法概說, 東京:明治書院, 1965.
- 邊台鉉, “우리나라 연속간행물의 표목 선정”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1990.
- 사공철 등편,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서울:한국도서관협회, 1986.
- 孫成祐, 李朝赫 共, 洋書目錄法. 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70.

丁海晟, "韓國 定期刊行物에 관한 調査 研究", 曉大論文集(1984), pp. 233~254.

崔達鉉, "逐次刊行物의 基本記入 選定에 관한 研究", 도서관학논집, 제2권, pp. 211~235.

韓國圖書館協會 編, 非圖書資料의 整理, 서울: 同協會, 1968.

韓國圖書館協會 篇, 韓國目錄規則—修正版, 서울: 同協會, 1965.

韓國圖書館協會 篇, 韓國目錄規則—3版. 서울: 同協會, 1983.

한복희, "우리나라 學術雜誌의 發展 過程 研究", 情報管理學會誌, 제6권 1호(1989), pp. 3~1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著: 張一世, 金斗植 共譯., 英美目錄規則—北美版 改正版.— 서울: 景仁文化社, 197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Chicago: ALA, 1967.

C. A. Cutter, *Rules for a printed dictionary catalogue*,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1987.

Heartsill Young,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1983.

Andrew D. Osborn, *Serial Publications: Their Place and Treatment in Libraries*—3rd Ed.— Chicago: ALA, 1980.